

개인 자유와 공동협력

- 자유의 허용과 제한 -

이승훈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목 차>

1. 개인의 자유
2. 루쏘와 하이에크
3. 자유인의 능력과 책임
4. 비의도적 자유 침해의 수용
5. 자생적 질서의 전개
6. 공동협력과 자유의 교환

< 요약 >

1. 개인의 자유

가. 자유 행사

- 선택 대안 : 힘과 능력
- 선택 규범 : 결과를 내다보는 안목

나. 외부 강제 - 선택 대안 축소 & 선택 규범 간섭

다. 거부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지향적 자유(positive liberty)

2. 루쏘와 하이에크

가. 루쏘 (지향적 자유)

- 자유는 타고난 권리
- 자연적 자유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도덕적 자유를 승화

나. 하이에크 (거부적 자유)

- 자유는 개인 존엄성의 필요조건
- '타인을 자기의 목적 실현에 강제 동원하려는' 외적 강제 최소화

3. 자유인의 능력과 책임

- 자유는 힘(재부) => 동등자유 실현을 위한 재분배!
- 롤스: '능력에 따른 성과는 나누어야' vs 행운권의 절차적 공정성
- 책임은 자유와 함께 가야 : 자유 행사의 결과를 책임지는 재평가로 규범을 재편
- 개인 간 능력 차이는 자유 행사의 결과이고 각자 이 결과에 책임져야!

4. 비의도적 자유 침해의 수용

- 위해원칙과 하이에크 자유 사이의 자유
- 일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합의 => 현실적 사회계약으로 자생적 질서를 형성

5. 공동협력과 자유의 교환

- 내 힘만으로는 안 되므로 남의 도움 필요
- 내가 남을 도와야 남도 나를 도와
- 공동협력의 본질은 합의에 의한 자발적 자유포기, 자유의 교환!
- 양도 불가능한 자유
- 이미 합의한 자유 포기과 자유 억압의 차이

0. 서론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공동협력에 참여하면서 살아간다. 협력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정 역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참여자들의 역무 수행과 때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협력에 참여하면 홀로 마음대로 지낼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공동협력은 참여자들을 상호의존적으로 만드는데 이 상호의존성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글은 공동협력이 불가피한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유 창달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개인 자유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상호의존적 사회에서 자유가 허용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개인은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일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데 이러한 상호 포기는 자유의 개인 간 자발적 교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계약을 개인들이 자유의 자발적 교환에 대해 협상하여 이루어내는 합의로 정의한다.

이 사회계약은 불완전한 이성과 정보, 그리고 불충분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이 합의한 세속적 계약으로서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합리주의의 틀 속에서 단숨에 이상적 내용을 담아내는 가상적 계약과는 다르다. 그리고 전체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가 법률체계만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끼리 체결하는 사적 계약 및 약속에 이르기까지 개인 간 실체적 합의를 모두 포괄한다. 사회계약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합의는 끊임없이 생기고 소멸하며 수시로 개별적 재계약을 거친다. 이 자생적 질서는 수많은 개인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합리적 이성의 의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자유에 책임을 연계하면 자생적 질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는 이 과정을 살피고 '자유 교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몇 가지 장애 요인을 살펴본다.

1. 개인 자유와 자유 행사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각자 자신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오는 외부 간섭을 싫어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간섭은 하나둘이 아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은 업무와 무관해도 감당해야 하고 술집과 좌판 상인은 터주 폭력배의 눈치를 봐야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 불평에 좌불안석이다. 아이가 좀 자라면 부모의 보호와 지도를 간섭으로 느낀다. 빛을 진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라면 부당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고 속 썩이는 자녀는 지난 생애 빚쟁이의 환생이다. 빚보증 잘못 섰다가는 내 집이었는데도 내 가족이 쫓겨나야 한다. 나 하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간섭이고 고개를 돌려도 다르지 않다. 천하에 널린 것이 간섭이라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자칫하면 그 덫에 빠진다. J.J.루소는 유명한 저서 '사회계약'¹⁾의 모두에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다(MAN is born free; and everywhere he is in chains)'라고 선언하였다.²⁾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을 살았으니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유를 허용하면 어찌 될까? 부하 직원에게 갑질해 대고 아래층 주민이 뭐라든 내 아

1) Jean 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1762. G.D.H. Cole 번역.

2) 아마 프랑스 인권선언의 제1조는 여기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할 것이다. 자유의 무작정 허용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다.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접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먼저 인간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까닭이다. 가장 지배적인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천성임을 들어 자유는 하늘이 주신 권리라고 규정한다. 1789년에 발표된 프랑스의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s) 제1조는 루소의 선언을 이어받아 ‘인간은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라고 천명한다. 이 생각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만인은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를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부여받았다(... all men are ...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life, liberty, and property)’를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inalienable natural rights)’으로 규정한 J.로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³⁾

그런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자고 울고 배설할 자유밖에 없다. 생존 자체를 포함하여 나머지는 모두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에 의존하며 복종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도록 한 것이 자연의 섭리다. 성년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자신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의 능력과 규범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 내용이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의 자유 행사는 성년에 이르러서도 부모의 가치관을 벗어나기 어렵다. 태어날 때 부모를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에 기대야 하는데 인간은 과연 자유롭게 태어난 것일까?

F.A.하이에크는 개인이 존엄하려면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⁴⁾ 노예가 비천한 것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존엄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꾸려나간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도 못하는 개인을 존중해줄 사람은 없으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주인(master)의 자격은 존엄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다. 즉 개인의 존엄성은 필수적으로 자유를 요구한다.

자유가 천부의 자연권이든 개인 존엄성의 필요조건이든 개인은 허용된 여러 대안 가운데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를 행사한다. 개인의 물리적 역량에 비추어 수행 가능한 모든 행동 가운데 어느 대안이든 스스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만약 어떤 외부적 힘이 일부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개인의 힘으로는 그 강제에 맞서 싸우지 못한다고 하자. 이 외부 강제는 선택지의 폭을 강제로 줄이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외부 강제가 억압해 오더라도 개인이 원래 원하던 대안은 여전히 선택 가능하다면 이 개인의 자유는 실효적으로는 침탈당하지 않은 것과 같다. 개인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했던

3) John Locke, *Second Treatise on Government*, 1689.

4) Eugene F. Miller, *Hayek's The Constitution of Liberty - An Account of Its Argument*, 2010, Hobbs the Printers. "At one point Hayek writes: 'A society that does not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has values of his own which he is entitled to follow can have no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cannot really know freedom'. Where does this individual entitlement to one's own values come from, and why is it true that individuals as such have a 'dignity' that we must respect? We are touching here on Hayek's ultimate justification for freedom."

선택지를 금지당할 때만 자유의 박탈을 실감한다. 선택 가능한 대안의 폭과 실제 선택을 결정하는 규범은 자유 행사를 결정하는 두 축이다. 나는 선택지 A를 원하는데 외부 강제가 A를 금지한다면 이것은 나의 규범과 외부 규범 사이의 충돌이다. 서로 충돌하는 규범은 공존하기 어렵고 보통 힘이 센 규범이 관철된다.

선택 대안의 폭은 자연조건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도 의존한다. 일반인은 매우 무거운 짐을 맨손으로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힘센 역도선수는 이 행동을 해낸다. 생활 과학 지식이 특출해도 보통 사람은 생각이 미치지 못할 일을 종종 해낸다. 다른 사람이 바라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 강력한 힘을 갖춘 개인은 자신의 선택 대안을 줄이려는 외부 강제를 퇴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은 선택지의 폭, 즉 자유의 폭을 결정한다.

같은 행동을 선택하더라도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 도덕적 평가는 선택 주체별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선택 대안이 같고 도덕적 평가의 기준인 규범이 같은 사람이라도 행동 결과를 내다보는 안목이 다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마 현명한 안목이 현명한 선택을 이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 행사는 결국 선택 대안의 폭, 선택 규범, 그리고 개인의 힘과 안목을 포괄하는 ‘능력’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요인은 자유 행사를 직접 결정하고 개인 능력은 선택지 폭과 선택 규범을 결정함으로써 자유 행사에 영향을 끼친다.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 간섭은 다양하나 그 기본 형태는 선택 대안을 강제로 줄이려는 압박이다. 선택 가능한 대안의 폭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의 크기이고 자유 억압은 결국 이 폭을 줄이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적 강제는 특정 대안(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대안(들)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므로 그 본질은 선택자의 규범에 대한 간섭이다.

외부 간섭이 없을 때 개인은 각자 원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그런데 자유인의 자유 행사가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매한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고 주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실제로 자유는 허용해야 마땅하다는 사례로 인용될 만큼 훌륭한 자유 행사도 있었으나 과연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일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많았다.

자유 허용의 조건은 결국 규범에 대한 간섭으로 귀결된다. 학자별 의견은 선택 대안의 폭을 최대한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특정 가치를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탈하는 외부 강제만 빼고 다른 모든 선택을 허용하는 자유를 ‘거부적 자유(negative liberty)’라고 한다. 이에 비해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선택만을 허용하는 자유를 ‘지향적 자유(positive liberty)’라고 한다.⁵⁾

‘지향적 자유’의 요구가 특정 대안(들)을 옹호하더라도 단순히 그 선택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자유는 ‘거부적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권장이 지나쳐서 강제하기에 이르면 이 간섭은 바로 의도적 자유 침탈의 외부 강제로 되어버린다. 이 경우 ‘거부적 자유’와 ‘지향적 자유’는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한다.

5) 국내 학계에서는 negative freedom을 소극적 자유로, 그리고 positive freedom을 적극적 자유로 번역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An Inaugural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on 31 October 1958* (Oxford: Clarendon Press, 1958) 참조.

2. J.J.루소와 F.A.하이에크

자유를 연구한 학자는 대단히 많고 필자는 그들의 연구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 공부하였다. 그 제한적 학습에서 필자의 천박한 생각을 가다듬는 데 지침이 된 저술은 J.J.루소와 F.A.하이에크의 연구다. 이 절에서는 두 사람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J.J.루소는 자유의 포기를 인간성의 포기로 볼만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⁶⁾ 물론 이 말은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므로 부분적 포기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할 수준의 완전한 자유 포기를 가리킬 것이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므로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는 본능에 휘둘리고 따라서 비도덕적이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스스로 원하면 한없이 많이 가지려 할 수 있고, 또 일이 잘되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면 실제로 이것을 가지는 권리를 누린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자연적 자유의 한계는 각자의 힘이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는 자신이 빼앗았거나 선점한 것을 지켜내는 자신의 힘에 따라서 결정된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꿈꾼 문명국가는 자연 상태와는 달리 본능을 정의로 다스리고 새롭게 도덕성까지 추가로 요구한다. 그리고 육체적 본능과 탐욕적 권리를 누르고 책임의 목소리를 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자기만 생각하던 개인이라도 그 행동이 본능적 취향에 내둘리기 이전에 이성적 판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⁷⁾

J.J.루소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서로 다투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 자유에 대한 위의 서술은 그러한 다툼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⁸⁾ 그런데 루소는 인류가 개인의 분산된 역량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를 만나면 힘을 합하여 이를 극복할 목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한다고 보았다.⁹⁾ 그는 이 공동체가 단순한 군집(aggregation) 아닌 이상적 연합(association)이 되려면 자연 상태와 확연히 다른 문명국가의 원칙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연적 자유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문명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소유 일체를 일단 공동체에 헌납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사회계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문명국가를 설립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 각자의 권리와 소유를 지켜왔지만, 문명국가는 헌납한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그대로 개인에게 되돌려주면서 이에 더하여 개인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루소의 기대였다.¹⁰⁾ J.J.루소는 이 사회계약의 성과물을 일반의지(general will)라고 불렀다.

개인별 사적 특수의지(particular will)가 원하는 자유는 자연 상태의 자유이므로 일반의지와 충돌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잃는 것은 사적 특수의지에

6) 그는 위 책 Book I chapter 4에서 “To renounce liberty is to renounce being a man, to surrender the rights of humanity and even its duties.”라고 서술하고 있다.

7) J.J.루소 같은 책 Book I chapter 8.

8) 이 점은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J.J. Rousseau 편에서 “... any individual’s capacity to get what he or she wants will be limited by his or her physical power and the competing physical power of others. Further, inevitable conflict over scarce resources will pit individuals against each other, so that unhindered exercise of natural freedom will result in violence and uncertainty.”라고 설명되어 있다.

9) 물론 ‘만인간 투쟁’을 이 거대한 장애의 하나로 보았을 수도 있겠다.

10) 루소는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계약을 위하여 헌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휘둘리는 자연적 자유이고 얻는 것은 일반의지를 따르는 '문명적 자유(civil liberty)'다. 각 개인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여 사회계약에 참여하므로 자발적으로 개별 특수의지를 버리고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그는 개별 특수의지가 일반의지에 항상 복종하는 상황을 개인이 '자유로워지도록 강제 당한다(forced to be free)'라는 도발적 명제로 묘사하였다.¹¹⁾

F.A.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강제가 최소화(coercion of some by others is reduced as much as is possible)'된 상태를 '자유 상태(state of liberty or freedom)'로 정의한다.¹²⁾ 그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이 강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자유 관련 정책의 임무는 이 강제 또는 그 해로운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The task of a policy of freedom must therefore minimize coercion or its harmful effects)'라고 선언한다.¹³⁾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표 실현에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강제 동원하는 사태를 막아야 자유가 바로 서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력을 합리적인 형태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개인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외적 강제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다. 그러므로 이 강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는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 행사를 제한한다. 하이에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표실현에 도구로 삼을 의도로 제압하여 강제 동원할 자유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J.J.루소의 일반의지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의도하는 개별 특수의지만을 통제하는 데 그친다면 F.A.하이에크의 제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J.J.루소는 '일반의지가 항상 옳고 공공이익을 지향(the general will is always right and tends to the public advantage)'한다¹⁴⁾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일반의지는 하이에크의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한 역할을 감당할 의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드러난 루소의 자유관은 하이에크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간섭의 배제로 보는 데 비하여 루소는 자유 행사의 질을 강조한다. 즉 하이에크는 소위 '거부적 자유'에 머물지만 루소는 '지향적 자유'를 옹호한다. 거부적 자유는 외적 강제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유를 행사할 것만 요구하는데, 지향적 자유는 이 자유 행사가 특정 가치를 지향할 것까지 요구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J.J.루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사회계약에 동참하도록 그들의 자연적 자유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 강제 동원하지 않는 한 자연적 자유를 허용한다. 그런데 루소가 그린 이상적 문명국가는 '개인의 재능을 자극 개발하고, 사상을 확충하고, 감각의 품위를 높여서 영혼 자체를 승화함으로써 ... 개인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만드는 도덕적 자유(moral liberty)'¹⁵⁾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가 고매한 가치 지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향 가치의 선택을 존엄한 개인에게 맡겨 두자는 것이다.¹⁶⁾

하이에크의 바람대로 외적 강제가 최소화된 상태는 개인 선택의 여건이고 이 여건에서 실제로 선택을 주도하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이다. 같은 선택지를 두고 사람들이 서로

11) J.J.루소, 같은 책 Book I chapter 7.

12) F.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57.

13) F.A.하이에크 같은 책, p.59.

14) 루소 전계서 Book II chapter 3.

15) 각주 4 참조.

16) 각주 3 참조.

달리 선택하는 까닭은 능력과 가치관이 개인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나 서로 다른 선택은 흔히 충돌하여 분쟁으로 확대된다. 윗층 주민은 아이가 마음껏 뛰놀게 하는데 아래층 주민은 낮잠을 선택하면 두 이웃의 선택은 서로 충돌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태 전개를 막아야 서로 다른 개인 선택이 공존하는 자유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 허용에 대한 논의의 주제는 흔히 자유 자체보다는 자유 선택을 결정하는 능력과 규범에 초점을 맞춘다. ‘거부적 자유’는 다른 사람을 내 목적 실현에 강제로 동원하는 능력과 규범을 문제 삼고, ‘지향적 자유’는 이에 더하여 소망스러운 능력과 규범을 가려내어 권장하려고 한다.

다양한 규범들이 그대로 공존하면 분란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충돌을 해소하도록 규범 별로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계약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다. 본인의 뜻에 반하여 다른 사람을 내 목적에 강제 동원하도록 결정하는 규범을 금지해야 한다는 ‘거부적 자유’의 요구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지향적 자유’가 권장하는 규범만 수용하고 나머지 모두를 거부해야 한다면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소망스럽지 않은 규범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기보다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도록 유도한다면 자유의 위축 없이도 ‘지향적 자유’를 창달한다. 자유에 책임을 연계하면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자유인의 능력과 책임

개인의 행동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수행 능력 또는 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수행할 힘이 없다면 그 행동은 선택지에서 배제된다.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자유도 그만큼 위축된다는 말이다. 즉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do what I want)’이고¹⁷⁾ 내 소망을 충족하는 힘이다. 이 힘이 커지면 나에게 허용된 선택지의 폭도 커진다. J.듀이는 ‘자유는 ... 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효과적 힘이다. ... 자유에 대한 수요는 힘에 대한 수요다.(Liberty is ... power, effective power to do specific things. ... the demand for liberty is a demand for power.’¹⁸⁾라고 하였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할 때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자유는 그만큼 위축된다. 개인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각자 원하는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키워야 한다.

개인의 힘이 곧 그 사람의 자유라면 사람마다 능력이 제각각인 사회에서 개인별 자유는 동등할 수 없다. 특히 각자 보유한 재부는 유효한 힘의 원천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자유가 없다.¹⁹⁾ 이렇게 인식한다면 동등자유 실현은 능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보조를 요구한다. F.A.하이에크는 자유를 힘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데 힘과 재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²⁰⁾

17) Voltaire는 *Le Philosophie ignorant*에서 “To be really free, is (to possess) power. When I can do what I wish to do, therein my liberty lies.”

18) John Dewey, “Liberty and Social Control,” *The Social Frontier*, 2(November 1935): 41-42.

19) “Inequalities of fortune ... are inequalities in individual liberty.” Robert Lee Hale, *Freedom through Law: Public Control of Private Governing Power*, Columbia University Press(1952), p.385.

일하는 능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주로 사후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배양된다. 타고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훈련과 교육에서도 더 우수한 성취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도 배양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된다. J.롤스는 타고난 재능이 능력 배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서 능력 발휘의 성과는 원천적으로 타고나는 행운에 좌우된다고 보았다.²⁰⁾ 따라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그 성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도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우수한 능력이 그 사람의 선택 대안을 물리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실제 선택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조정당해야 옳다고 믿는다. 즉 유능한 사람의 자유는 자기 능력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위해 재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J.롤스의 자유는 '지향적 자유'다. 그는 '최악혜택집단(the least advantaged)'의 복리를 최대화하는 '지향적 자유'를 제창한다. 그런데 그의 능력관은 그의 단일 저서 안에서조차 논리적 모순을 범한다. 그는 일단 타고난 재능의 개인 간 차이는 자연이 주신 섭리인 만큼 이것을 비정의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나는 우연이 개인의 운명을 가른다. 그는 우연히 부족하게 배정된 재능 때문에 두고두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인간 사회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비정의라고 규정한다. J.롤스는 이 정의 원칙을 내세워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재부라도 그 개인이 소유할 도덕적 근거는 없다고 선언하고 재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는 같은 책에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다루면서 상반된 결론을 내세운다. 즉 행운권 추첨의 절차가 공정하고 실제로 그 절차대로 추첨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행운권 추첨에서 당첨되는 것과 같다. 그는 이 당첨은 자연이 결정한 것이므로 비정의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세계에서 비정의는 불공정이다. 즉 추첨 절차는 공정하다는 말이다. 그러면 공정한 추첨으로 점지 받은 재능은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하였으므로 역시 공정해야 옳다. 그러나 그는 이 재능으로 얻는 소득을 재능보유자가 가질 도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공정성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모순은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서 재능을 얻은 사람이 그 재능을 소유하면 공정하다고 하든가, 또는 우연히 얻은 소득이면 절차적으로 공정했더라도 공정성을 부정하고 재분배해야 한다고 해야 풀린다. 그러나 J.롤스는 우연 소득의 비도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동시에 지지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F.A.하이에크는 개인이 존엄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나가야 하므로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도록 외부에서 권장하는 일은 개인의 존엄성을 깎아내릴 수 있으므로 자유는 '거부적 자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한다.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에 필수적이라면 자유 행사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자신의 자유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주장한다면 몰염치한 일이다.

자유 행사의 결과가 도덕적이고 훌륭할 때 칭찬 받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개인이다. 그 행동을 선택하여 수행한 결과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도 얻었다면 돈, 명예, 그리고 지위도 모두 그렇게 행동한 개인의 몫이다. 반대로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일 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다.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하고 속죄해야 한다. 개인의 부와 명예는 그것이 남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탈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얻은 것일 때 번듯하다. 만약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남에게 폐해를 유발한다면 스스로 그 뒷

20) Hayek, *ibid.* p.68.

2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감당의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존엄하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할 때에만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물론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우연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이 결과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는 예컨대 10%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벤처 투자의 성공 확률은 5%를 밑돈다고 한다. 개인 선택의 영향이 다른 우연적 요인의 힘에 압도당하거나, 선택을 결정하는 가치관과 능력 자체가 과거 우연적 요인들의 누적된 결과물일 뿐이라면 모든 개인 선택의 결과는 선택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특정하게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²²⁾ 이러한 결정론은 특정 시점에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행동의 결과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이에크 같은 학자들은 개인이 각자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결정론을 내세울 것을 우려한다. 결정론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으므로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전제군주의 행동 또한 그 군주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내 목표 실현의 도구로 삼는 행동 역시 이미 사전에 결정된 것이고 이 사태에 항거하는 '거부적 자유' 운동 또한 마찬가지다. 이 운동의 성패도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하이에크가 아무리 자유를 설파하고 보급해 보아야 그 결과에 미칠 영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성취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예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자유 자체가 의미 없는 개념이고 이에 대한 논쟁은 더욱 그러하다. 자유는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일 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일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고찰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과학적 결정론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정론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틀 속에서 진행되는데 굳이 자유를 갈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즉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 사람은 결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따라서 자유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할 논거가 없는 사람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도 자유 행사에 대한 뒷감당은 싫고 두렵다. 뒷감당이 싫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의 불만스러운 내 처지가 내 책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다.²³⁾ 자유의 행사는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족쇄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강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과거 자신이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불편한 족쇄로 느끼는 정서가 결정론과 연계하면 책임을 부정하고 결국 자유가 설 땅 자체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치달는다.

그러나 애초에 행동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다. 또 개인이 행동을 취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선택한 개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성공 확률 5%인 벤처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공의 대박을 얻기 위해 실패의 뒷감당을 각오한다. 결과를 감당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 허용의 기본 조건은 모든 자유 행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22) 19세기 유럽의 과학적 결정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하이에크 같은 책의 제5장 *Responsibility and Freedom* ckawh.

23) 하이에크, 같은 책 p.133.

자유 행사에 책임을 연계하면 개인은 더 진지하게 선택을 결정할 것이다. 자유를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면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할 기회를 가진다. 이 기회를 활용하면 선택의 결과를 내다보는 지혜를 키우고 무슨 역량을 키워야 할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거부적 자유’가 금지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내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는 국가공권력의 제재가 기다린다. 이 제재의 쓴 맛을 본 개인은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압박하는 선택을 피할 것이다. ‘지향적 자유’가 특정한 가치를 권장하는 사회는 이 가치 실현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는 사람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행사에 책임을 연계하면 권장하지 않는 가치의 추구를 굳이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권장 가치를 추구하도록 선도할 수 있다.

‘책임지는 자유’는 개인 간 능력 차이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간다. 자유인은 오직 자신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책임지는 자유’는 스스로 노력하여 취득한 능력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유인의 능력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추수록 이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사회라면 개인은 각자 자기 능력의 개발과 강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 능력 개발에 힘을 쏟기로 선택한 사람은 우수한 능력을 누릴 것이고 소홀히 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능력은 열악할 것이다.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폭은 현재의 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자유가 그만큼 위축된 탓은 그 자신이 능력 개발 및 강화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코 사회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개인 간 능력 차이가 두드러진 점을 우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능력을 재분배한다면 이 조치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자유를 조장할 뿐이다. 유능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만이 아닌 사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J.롤스의 요구는 이 개인에게 자신이 져야 할 몫 이상의 책임을 추가로 부과한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한 결정은 해당 개인에게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 행사에 대한 간섭이 된다. 남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유는 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를 ‘거부적 자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면 J.롤스가 능력자에게 요구하는 추가적 책임은 재분배로 혜택 받을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할 몫이다. 그러므로 J.롤스적 개인 자유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무책임의 자유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는데도 다른 유능한 사람의 능력이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회에서는 일반적 개인의 능력 개발 유인은 소멸한다. 그러나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존엄한 개인들의 사회라면 개인은 가능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 개인 간 능력 차이는 그 결과일 뿐이다. 이 차이를 중대한 사회 부조리로 취급하여 무책임의 자유로 일탈하면 그 사회는 결국 능력 저하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능력 개발 유인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힘들여 능력을 개발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누가 힘들여 능력 개발에 열정을 쏟을까? F.A.하이에크는 선택지가 많다는 것과 선택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힘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지적대로 자유가 곧 힘은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힘은 자유인의 선택이 가져오는 성과다. 개인 별 능력 차이는 불평등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를 개인 별로 달리 행사한 결과일 뿐이다. J.롤스처럼 타고난 재능의 불평등에 원인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의 말대로 이 사실이 ‘절차적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자유 행사의 결과는 자유를 그렇게 행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는 자유’는 애써

개발한 능력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요구한다. 인간의 기본권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타고난 재능 또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권리다. 이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자유, 적어도 '거부적 자유'에는 명백히 역행하는 외적 강제다.

4. 비의도적 자유 침해의 수용

'거부적 자유'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표 실현에 강제 동원할 자유만을 배격한다. 강제 동원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으로서 억압당하는 사람의 반발을 부른다. 반발이 강하면 충돌이 발생하고 약하면 제압당한 사람이 자유를 잃는다. 그러므로 남을 강제 동원하는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적지 않은 충돌이나 자유 상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 동원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의 자유 행사가 다른 사람의 반발을 유발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모두에서 언급한 층간소음 분쟁이 하나의 예다. 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하는 내 자유 행사가 뜻밖에 아래층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자유와 충돌한다. J.S.밀의 '위해원칙(harm principle)'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 행사는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므로 정작 해를 끼치는 행동에 적용할 원칙은 아니다. F.A.하이에크가 지지하는 '거부적 자유'는 남을 강제 동원하는 자유만 금하므로 역시 개인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모든 경우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남을 해칠 뜻이 없는 수많은 자유 행사가 사회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면 '거부적 자유'와 '위해원칙'만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분쟁유발 상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 행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사회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큰 경우에만 해당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적 기준이다. 그런데 공리주의적 접근은 손실과 이득을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자신의 손익이 더 중요하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공리주의적 기준을 내세운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일쑤다. 현실에서 공리주의적 기준은 사람 간 분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의 자유 행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만 허용한다고 하면 사회생활에서 허용되는 자유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유의 행사로 피해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수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이 자유는 허용하더라도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예컨대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보자. 누가 내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할 때 나는 화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에 나도 반박할 권리를 같이 누리는 조건이라면 나는 언론 자유의 허용에 동의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개인의 자유가 의도치 않게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각자 입는 피해를 수용할 조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일단 각각 동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이다. 특정 개인에게만 허용된 특권적 자유는 없다.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태어났다'고 한 인권선언의 조문처럼 동등한 자유는 타고났다고 본다. 이 동등한 자유를 행사하면서 살다 보니 나는 위층에 살고 내 이웃은 아래층에 살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을 '괴롭힐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나 아래층 주민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힐 그런 자유가 없다. 얼핏 동등 자유가 아닌 증거처럼 보이지만 원초적 동등 자유를 각자 달리 행사한 결과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고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양보하려 하지 않으면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협상 결과는 사안 별로 다르겠지만 당사자들이 자신의 자유 행사를 조금씩 제한하거나 다른 자유에서 양보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예컨대 아래층 주민이 동의하는 시간대에만 애들을 뛰놀게 한다면 위층용 주차공간을 아래층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이 가능하다. 또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대를 근거 없이 모욕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서 허용한다. 이처럼 각자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기로 양보하면서 나머지 자유를 허용받는 것이 문명사회가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다. 자유 사회의 사회계약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한 자발적 약속이다.

그런데 자발적 약속이라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부분적이거나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사회가 분쟁에 휘말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통제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공권력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합의가 그대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의 공권력은 사람들이 각자 허용된 자유만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용된 자유 행사에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F.A. 하이에크는 다른 사람을 내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외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이 역할에 더하여 정부는 자유 행사에 대한 사회계약을 시행하는 과업도 함께 맡아야 할 것이다.

요약해 보자. 자연적 자유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다. 각자의 자유 행사는 서로 충돌하고 사회는 분쟁을 헤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강제력으로 제압하여 내 삶의 목표 실현에 도구로 삼는 폭행은 막아야 한다. '거부적 자유'는 바로 이 외적 강제의 배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거부적 자유'만으로 자유 행사 간 충돌을 막을 수 없고 분쟁 없는 자유 사회를 보장할 수 없다. 문명사회의 자유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허용된다. 정부의 역할은 '거부적 자유'의 관철에 더하여 이 사회계약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5. 자생적 질서의 전개

J.J. 루소의 사회계약은 그의 이론이 제시하는 이상적 합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가상적 계약이다. J. 롤스의 사회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대 문명사회의 법체계는 가상적 계약이 아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합의를 통하여 일구어낸 구체적 계약이다. 개인과 집단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고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고 합의하면서 사회 운영체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수정해 나간다.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질서가 특정 개인의 의도적 설계가 아니면서 수많은 개인의 의지를 수용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다.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의 본질은 개인들이 자유를 서로 요구하고 양보하면서 사회적으로 허용할 자유의 내용을 결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고쳐나가는 합의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 점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사적 특수의지를 버리고 일반의지로 합의하는 과정을 그린 J.J. 루소의 설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사회계약의 1권 8장에서 자연적 자유를 버리고 문명적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개인에게 유리한지 설명한 다음 이 사실을 인지한 개인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특수의지를 버리고 일반의지로 합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더 좋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문명국가의 기본 골격인 일반의지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의 합의 과정만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의 설명은 이러한 합의가 이후에도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된다는 수준까

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자생적 질서의 생성과 운용 방식을 다루지는 못한다. 단번에 이상적 체제를 고안한다는 합리주의적 전통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루소는 더 좋고 더 필요한 자유를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그보다 못하고 덜 필요한 자유를 포기한다는 계약 원리는 분명히 함으로써 자유 허용의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 시각으로 보면 자유는 단순히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항목별로 일부 자유는 허용하면서 다른 일부는 제한하는 데 사람들이 동의하면 하나로 다듬은 전체 자유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모든 개인이 함께 누릴 자유의 체계는 개인 간 자유를 '교환'하는 방식을 통한 사회계약이 낳은 결과물이다.

가상적 사회계약의 내용은 단숨에 루소의 '일반의지'나 롤스의 '정의원칙'과 같은 이상적 수준을 갖추지만,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체결되는 사회계약은 그렇지 못하다. 불완전한 이성, 지혜, 그리고 정보를 가진 개인들이 눈앞의 문제밖에 못 보는 단견으로 합의한 결과물이니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많다. 가상적 계약이 그리는 이상과는 판이하고 결함투성이이지만, 그런대로 합의된 사회질서의 틀로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불완전한 만큼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고 그때마다 재합의 형식으로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데 수정해도 완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가상적 사회계약처럼 한 사람이 설계한 일사불란한 작품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성과로서 불완전한 이성, 미흡한 지혜, 그리고 정보의 결함이 빚어내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불완전한 개인 이성은 계속 학습한다. 각자 보유한 단편적 정보를 모으면 더 나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불완전한 경험이라도 반성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얻은 교훈을 축적하면 자생적 질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전지(全知)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합의는 언제나 예견하지 못한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다. 책임지는 자유인은 낭패를 겪으면서 깨닫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합의에 이른다. 자유를 허용할 때 함께 부과하는 책임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유인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 학습 유인이 자생적 질서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이끈다.

자유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행사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개인의 자유 행사와 충돌할 수 있는데 '거부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는 이 충돌이 힘겨루기로 일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그러므로 충돌할 때마다 관련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하여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보유 지식과 정보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 표출된 지식과 정보는 협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공유한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취득한 개인은 이에 맞게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하고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가치 실현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생적 질서는 자유인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을 선택하고 이 행동들이 충돌할 때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질서다. 이성, 지식,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한 개인들의 자유 행사와 그 자율적 조율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에 책임을 연계*하면 협의 과정에서 단편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유인이 활성화된다. 불안정하지만 책임감 있는 각 개인이 결과를 반추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과 합의를 지향하는 자생적 질서라면 그 미래, 적어도 장기적 미래를 낙관해도 좋을 것이다.

6. 공동협력과 자유의 교환

현대 사회는 J.J.루소의 말대로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조직적 연합이다. 사람들은 사회의 틀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더 원활한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이 틀을 고쳐나간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는 나의 일을 도와주는 공동협력이 발달할수록 개인 간 상호의존성은 높아져 간다. 공동협력에서 나와 너는 역할을 분담하고 필요한 시점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공동협력은 차질을 빚는다. 그러므로 개인이 일단 공동협력에 참여하면 약속한 대로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역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계약은 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속이다.

공동협력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은 협력 참여자 개개인이 각자 자유를 행사한 결과다. 그리고 계약 이행의 의무는 이 자유 행사에 따르는 책임이다. 너와 내가 자유롭게 공동협력에 참여하면 나는 너의 목표 실현에 동원당하지만, 너도 내 목표 실현에 동원된다. 얼핏 보기에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외적 강제와 비슷하나 일방적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쌍방 협력이다. 내가 너의 목표 실현에 동원당하는 까닭은 너의 폭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너를 내 목표 실현에 동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공동협력도 외견상으로는 각자 남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각자 자신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벌이는 노력일 뿐이다.

개인이 단독으로 행동할 때는 마음껏 누리던 자유를 공동협력에 참여하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자유직은 출퇴근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일단 취업하면 시간에 맞춘 출퇴근은 의무가 된다. 비록 자유의사로 취업했으면서도 출퇴근이 마치 내 자유를 구속하는 외적 강제로 느껴진다. 공동협력의 이익을 얻으려고 각자 자유의사로 참여했지만, 이 이익의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기로 약속한 탓이다. 자유의 시각에서 보면 공동협력 참여의 본질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각자 현재 자신이 누리는 개인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행위다.

자기 삶의 주인인 자유인에게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모두 자신의 목표 실현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각자 혼자 힘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한계는 뻔하다.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는데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도움을 얻어내려면 응분의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대가제공에 쓰이는 노력과 자원은 내 목표 실현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게 도움을 주는 타인의 목표 실현에 동원된다. 그리고 이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은 그 보답으로 내가 원하는 도움을 제공해 온다. 만약 대가제공을 거절하거나 대가를 받고도 도움 제공을 거부한다면 공동협력은 붕괴한다. 자발적 공동협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의 의무화가 필수적이다. 즉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도 내 자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 포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즉 공동협력에서 나타나는 자유 포기는 자유의 자발적 교환이다.

인류의 사회생활은 다른 동물은 영위하지 못하는 정교한 공동협력을 통해 전개된다. 어쩌면 사회생활은 이 공동협력을 위하여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공동협력이 사회생활의 핵심인 만큼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공동협력의 틀은 자유 사회의 기본구조가 된다. 자유 존중의 공동협력에 참여하는 개인은 먼저 자유의사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할당된 역무를 이행하고 합의된 보상을 받는다. 계약체결은 자유이지만 그 이행은 책임이다.

자유 존중의 공동협력은 참여만이 아니라 이탈도 자유롭다. 다만 자유로운 이탈도 계약 준수의 책임에서 예외가 아니므로 계약에 명시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유인은 독자적 활동보

다 더 유리한 공동협력을 골라서 참여할 것이고, 더 나은 기회가 나타나면 현재의 협력을 탈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동할 것이다. 공동협력의 참여와 탈퇴는 모두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약의 자유와 그 이행의 책임은 자유로운 공동협력의 토대다.

개인이 모든 공동협력을 거부할 때 남는 선택지는 독자적 활동이다. 자유인의 독자적 활동에는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이 없다면 독자적 생산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자유는 계약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자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 즉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기본제도로써 자유인의 독자적 활동이나 공동협력 참여에 꼭 필요한 장치다.²⁴⁾ 이 장치를 기초 삼아 펼쳐는 자유 존중의 공동협력으로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한다.

공동협력이 고도화할수록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성은 높아진다. 상호협력에 익숙해지면 노력의 효율성도 개선되고 낯선 신참보다는 오래 함께 일한 파트너가 협력에 훨씬 더 유리하다. 현재의 협력팀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팀에 참여하려면 적지 않은 장애를 각오해야 하므로 상호의존적 공동협력에서 벗어나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참여와 이탈이 자유로운 자발적 공동협력이라도 상호의존도가 높으면 탈퇴와 이동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비록 각자 자발적으로 현재의 공동협력에 참여하여 스스로 동의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긴밀한 상호의존성 자체가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강제라고 느끼기 쉽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탄식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다.

공동협력의 성과는 협력 파트너의 개별 능력과 열성, 그리고 협력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잡다한 협력을 거듭 거치다 보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부상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이 파트너일 경우 다른 사람과 일할 때보다 성과가 더 좋고 내뿜도 더 많아진다면 갑과 함께 하는 공동협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 경우 갑의 낙점을 받으려면 경쟁자들을 눌러야 하는데 이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은 갑을 위하여 나의 개인 자유를 더 많이 포기하는 선택이다. 그 와중에서 갑처럼 공동협력의 주도권을 손에 쥔 쪽의 요구는 흔히 갑질의 횡포로 일탈하기 쉽다.

자유로운 공동협력이 만든 상호의존적 관계의 틀에서 다른 사람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것은 각자 동의한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유인의 행동이다. 일방적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런데 고도화한 상호의존성이 만든 경직적 협력관계는 이 관계를 지배하는 쪽의 갑질, 즉 일방적 억압과 뒤섞일 수도 있다. 협력 계약은 주기적 갱신을 거치는데 다가올 재계약에서 을이 갑과의 공동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자. 만약 지금 갑이 을에게 현행 계약으로 약속한 것보다, 또는 법령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 포기를 요구한다면 분명히 부당한 요구다. 그러나 을로서는 재계약 성사를 위하여 굴복을 결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강요와 굴복은 자유인 간의 자발적 협력을 강제적 자유 침탈로 변질 시킨다.²⁵⁾

외적 강제가 최소화된 '거부적 자유'의 질서 속에서 공동협력에 필수적인 상호의존성을 마치 자유 침탈적 외부 강제인 것처럼 인식하는 오해는 자유 창달에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공동협력 주도자의 갑질에 따른 굴복을 마치 자유 계약의 의무 이행으로 강변하는 것도 자유 실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자유로운 공동협력이 구축한 상호의존성은 협력 참여자들이 합의한 계약에서 비롯하는데 이에 따르는 것은 굴복적 자유 포기가 아니라 자유인의 책임이행이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에 편승한 갑의 횡포는 자유를 침탈하는 외부 강제이므로 자유

24) J.롤스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두 항목을 기본 자유 목록에서 제외한다. J. Rawls 같은 책.

25) 이러한 일탈의 위험은 고용계약과 납품계약에서 높다.

창달의 목표를 위해서는 상호의존성과 일방적 횡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자유를 일부 더 얻는다는 '자유 교환'의 발상은 자유를 존중하는 공동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 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자유 가운데는 '양도 불가능한(inalienable)' 자유가 있다는 인식이다. 양도 불가능한 자유를 포기하는 데 합당한 쌍방 계약은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무효다. 예를 들어보자. 신앙 양심의 자유는 대표적인 양도 불가능한 자유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즉 자결권도 양도 불가능하므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D.엘러먼은 고용계약이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책임과 자결권을 부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고용계약은 노동자를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나 투입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²⁶⁾

자유 가운데에는 물리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것도 있다. 본인(principal)은 대리인(agent)이 본인을 위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하고 대리인을 고용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이 눈치 채지 못할 때마다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경제학자들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부른다. 본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성심껏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대리인은 틈날 때마다 나태할 자유를 누린다. 본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은 대리인이 스스로 나태할 자유까지도 본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약속이다. 대리인 문제는 이 자유의 완벽한 양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특정 자유는 양도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도 사회적 규범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많은 사회가 자신을 노예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사람의 장기를 상업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도 많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배제하는 자유는 '거부적 자유'가 아니고 '지향적 자유'다. '거부적 자유'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다른 사람을 내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 강제로 동원하는 것만 아니면 허용하고 실제 선택은 선택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맡긴다. R.노직은 양도 불가능성을 거부하고 개인이 자신을 노예로 팔 자유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²⁷⁾ M.로스바드도 종신 노동계약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의 양도불가능성을 부정한다.²⁸⁾ 물론 노직이나 로스바드가 스스로 노예 신분이나 종신 노동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유가 '거부적 자유'의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할 뿐이다.

공동협력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 일부를 포기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남들의 자유 포기로 내가 얻는 이익은 가지고 싶지만 내 자유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각자 기회만 닿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공동협력은 자유 침탈로 돌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자유 포기과 강제적 자유 침탈의 경계는 모호할 경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공동협력에서

26) David P. Ellerman, "Translatio versus Concessio: Retrieving the Debate about Contracts of Alien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oday's Employment Contract" (PDF). *Politics & Society*. 33 (3), 2005, 449-480. D.엘러먼은 "[t]he employee is legally transformed from being a co-responsible partner to being only an input supplier sharing no legal responsibility for either the input liabilities [costs] or the produced outputs [revenue, profits] of the employer's business" 라고 적고 자결권의 이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고용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7) "The comparable question about an individual is whether a free system will allow him to sell himself into slavery. I believe that it would. (Other writers disagree.)" in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1999. p.331

28) "[I]f A has agreed to work for life for B in exchange for 10,000 grams of gold, he will have to return the proportionate amount of property if he terminates the arrangement and ceases to work." in Rothbard, Murray N. (2009), *Man, Economy, and State with Power and Markets* (PDF) (2nd ed.).

는 실제로 자발적 자유 포기를 가장한 침탈의 위험, 그리고 거꾸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약속의 책임을 자유 침탈로 오해하고 무책임의 자유로 탈선할 위험이 모두 매우 높다. 그 기반을 허물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공동협력을 추구하려면 사회가 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한다. 특히 자유의 양도가능성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확실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

7. 결론적 소감

개인의 자유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서로 충돌하므로 이 충돌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J.S.밀의 '위해원칙'은 남을 해치지 않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규정하고, F.A.하이에크의 '거부적 자유'는 강제로 남을 내 목표 실현에 수단으로 동원할 자유를 반드시 금지해야 할 자유로 규정한다.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자유는 의도치 않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유다. 이 자유는 그대로 허용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허용되는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 자유로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자유 행사가 남에게 폐를 끼치면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피해자가 폐를 수용할 조건을 합의하고 그 조건에 따른 자유 행사를 허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합의는 사회계약의 명시적 체결로 구체화되므로 가상적 체결을 가정하는 전통적 사회계약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합리주의적 토대에서 이상적 계약 내용을 단숨에 얻는데 비하여 본문에서는 불완전한 이성 및 정보와 불충분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이 그때그때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만 허술한 계약 내용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재계약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수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매 시점의 계약 내용은 사회질서를 관장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자생적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개인은 자유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유 행사를 거듭하면서 불완전한 정보와 불충분한 지식을 꾸준히 개선하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배양한다. 그 결과 자유 행사의 성과는 더 나은 개인별 성과를 거두게 되고 사회도 발전한다. 특히 공동협력에서는 각자 특정한 역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하는데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지만 한번 계약하면 계약 내용은 의무가 되므로 내 자유를 구속한다.

현대인의 생업은 그 속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동협력이다. 협력이 구축하는 상호 의존성은 그 자체로 개인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기 마련인데 이 성향이 지나치면 자칫 부당한 자유 침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동협력 과정에서 상호의존성이 개인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당한 자유 침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동협력이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세 가지다.

첫째, 스스로 동의한 책임의 무게다. 각자 필요해서 계약하고 공동협력에 참여하는데, 협력의 혜택은 필요하나 의무 수행은 부담스럽다. 스스로 자유롭게 못하다고 느낄 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옥죄는 억압이 스스로 동의한 책임의 무게일 경우가 많다.

둘째, 어떤 자유는 결코 양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양도 불가능한 자유를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라도 원천 무효다. 그런데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의 양도를 요구한다면 이 요구는 자유의 부당한 속박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을 주도하는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갑질의 횡포를 자행하면 횡포를 당하는 참여자의 자유는 체계적으로 침탈당한다.

첫 번째 항목이 주는 부담은 자유 억압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유사회는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의무를 자유 침탈로 인식하

기 쉽고 그렇게 되면 공동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 사회의 기반이 흔들린다. 두 번째 항목은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 양도 불가능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면 자유 존중의 공동협력은 그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은 양도 불가능하므로 모든 고용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엘러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임노동 고용이 존재할 수 없다. 세 번째 항목의 갑질은 명백한 자유 침탈이다. 그러나 자유를 침탈당하는 당사자가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갑질은 사각지대에서 정부 감독을 피한다.

개인 자유가 존중받는 공동협력의 체제를 갖추려면 자유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무책임의 자유를 방치하면 공동협력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양도 가능한 자유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제한해도 공동협력은 크게 위축된다. 협력 주도자가 실제로 개인 자유를 침탈하는 갑질도 공동협력의 저해 요인이다.

사회생활의 주요 목적이 공동협력이고 공동협력에 따른 상호의존성은 불가피한 만큼 공동협력 과정에서 개인 자유의 침탈을 상호의존성으로 호도하기 쉽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자유와 계약의 자유는 자유를 존중하는 공동협력의 기본 토대다. 그리고 자유 행사에 책임은 필수라는 인식을 널리 보급하고, 물리적으로 양도 가능한 자유를 모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협력 주도자의 갑질을 방지하면 상호의존성과 자유침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분업이 고도화할수록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유가 위축되거나 협력이 축소될 것이다.